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4. 11. 27. (수)	총 8페이지	담당자	김수현 변호사/상담원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38길 9-1, 은혜빌딩 6, 7층			http://www.teen-up.com	
전 화	02-6348-1318	전 송	02-2690-1255	teen-up.com@daum.net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적 목적 대화를 즐겨온 성착취범 '우쭈쭈'에 대해 기소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도 집행유예로 선처한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성착취목적대화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KBS 시사기획 창과 함께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룹밍 성착취 피해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전형적인 온라인 그룹밍 수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한 범죄자(라인 메신저 닉네임 '우쭈쭈', 피고인 이○○)를 발견하여 고발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1심 재판부)는 2024년 7월 26일(금) 피고인 이○○에 대해 집행유예 4년(징역 2년 6개월)과 부수처분(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양형부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몰수명령 면제 부당을 사유로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2심 재판부)는 2024년 10월 23일(수) 항소를 기각하여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1. 경과

날 짜	경 과
2022년 08월 02일(화)	[시사기획 창 382회] 온라인 그루밍 ‘너를 사랑해’ 1부 악마의 그루밍 방영
2022년 08월 25일(목)	십대여성인권센터 고발장 접수(서울특별시경찰청)
2022년 09월 20일(화)	[시사기획 창 387회] 온라인 그루밍 ‘너를 사랑해’ 2부 거미줄 그루밍 방영
2022년 10월 18일(화)	[시사기획 창 391회] 온라인 그루밍 ‘너를 사랑해’ 스페셜 ‘여전히 그 곳엔 우쭈쭈’ 방영
2023년 05월 16일(화)	서울중앙경찰서 기소의견 송치
2023년 06월 14일(수)	십대여성인권센터 경찰 송치 결정 환영 보도자료 배포
2024년 02월 05일(월)	대구지방법검찰청 기소 처분
2024년 03월 05일(화)	십대여성인권센터 검찰 기소 처분 환영 보도자료 배포
2024년 05월 22일(수)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고발인 의견서 제출
2024년 05월 29일(수)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1심) 공판기일 진행
2024년 07월 24일(수)	십대여성인권센터 엄벌탄원서 제출
2024년 07월 26일(금)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1심) 판결 선고
2024년 08월 01일(목)	대구지방법검찰청 검사 항소장 제출
2024년 09월 25일(수)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2심) 공판기일 진행
2024년 10월 21일(월)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고발인 의견서 제출
2024년 10월 23일(수)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2심) 판결 선고(종결)

십대여성인권센터와 KBS 시사기획 창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실태를 알리기 위해 온라인 그루밍 ‘너를 사랑해’ 다큐멘터리를 공동기획하여 2022

년 8월 2일(화), 2022년 9월 20일(화), 2022년 10월 18일(화) 총 3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 해당 방송은 십대여성인권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과 ‘KBS 시사’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태 보도를 위해 아동·청소년을 섭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성인 연기자들이 13세, 15세, 17세 아동·청소년으로 나이를 설정한 후 채팅앱에 접속하여 연기했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촬영 현장에 함께 했다. 연기자들에게는 대화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기, 범의 유발을 하지 않기, 대화 상대방에게 아동·청소년임을 명확히 밝히기 등의 규칙이 있었다.

성인 연기자들이 아동·청소년으로 채팅앱에 접속하기만 했을 뿐인데 수많은 성인이 먼저 말을 걸고 대화를 시도했다. 그중 ‘우쭈쭈’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피고인 이○○이 있었다. 피고인 이○○은 촬영 기간 내 연기자가 수차례 13세 초등학생임을 밝히며 소극적으로 대화에 임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자신의 성기 사진을 일방적으로 전송하고, 연락이 끊기지 않게 일주일 내내 계속 대화를 시도하며 신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하고, 성적 목적 대화의 수위를 높여갔다. 피고인 이○○은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했으며 채팅앱에서 라인으로 플랫폼을 옮기자고 하며 라인 음성통화로도 성적 대화를 지속했다. 이는 채팅앱을 통해 아동·청소년과 한두 번 대화를 나눠 본 수준이 아니었다. 연기자들과 현장의 스태프들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루가 다르게 수위가 높아지는 피고인 이○○의 성적 대화 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실시간으로 성착취 상황을 목격하며 이런 상황을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이 겪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스럽기까지 했다.

지난 보도자료(2024. 6. 14.자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십대여성인권센터는 피고인 이○○의 범행을 좌시할 수 없어 보도에 그치지 않고 본 센터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배수진, 김수현, 김병희, 김현아, 최은미, 한옥 변호사)들과 함께 2022년 8월 25일(목) 피고인 이○○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발하였다. 당시 피고인 이○○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정보는 채팅앱 및 라인에서 사용했던 닉네임밖에 없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기초로 수사 끝에 ‘우쭈쭈’의 신원을 특정하여 2023년 5월 16일(화) 위 범죄 혐의들에 관하여 전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본 사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2024년 2월 5일(월) 피고인 이○○을 기소하였다.

그동안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성착취 목적 대화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 아닌 수사기관 등인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동법 제25조의2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하여 허용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통해 범죄자를 검거하더라도 처벌이 불가하여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자들은 채팅앱이나 라인을 이용하여 성착취 범죄를 저지를 경우 대화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수사상의 한계와 위와 같은 입법 공백을 노려 마음 편히 범죄를 저질러 온 것이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위와 같은 실태를 적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이○○을 수사하여 법정에 세운 수사기관의 결정과 노고에 감사한 마

음으로 환영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이○○이 엄중한 처벌을 받고, 본 고발사건을 계기로 적극적인 위장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 재판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지켜봤다.

* [2023. 6. 14.자 보도자료]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자 우주쭈(닉네임)를 추적, 수사하고 각 혐의 전부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서울중앙경찰서의 결정을 환영한다.

http://www.teen-up.com/load.asp?sub_p=board/board&b_code=1&page=2&idx=3878&board_md=view

* [2024. 3. 5.자 보도자료]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자 “우쭈쭈”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환영하며, 수사기관은 적극적으로 위장수사하라.

http://www.teen-up.com/load.asp?sub_p=board/board&b_code=1&page=1&idx=3954&board_md=view

2. 논평

피고인 이○○의 범행 대상은 명백히 13세 아동이었다. 피고인 이○○은 범행 과정이 촬영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성적 목적 대화의 상대방을 13세로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법정에 선 피고인 이○○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고 범행 전부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초범이고, 병을 앓고 있어 일상생활도 어려워 아동·청소년을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없는 상태였고, 집에 칩거하며 생활하다 보니 만나지 않고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는 죄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범행의 대상이 실제 아동·청소년도 아니었고, 범죄사실을 알게 된 자신의 부모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며, 해당 사건이 보도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에서

불 때 피고인 이○○의 범행 인정은 반성의 차원에서 하는 자백이라기보다 피고인 이○○의 범행이 촬영 현장에서 그대로 녹화되어 있어 증거가 명백 하였으므로 피고인 이○○으로서는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이○○은 법정에서 혼자 걸어서 왔을 정도로 거동에 불편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고, 사회 경험이 있는 50대 남성으로 온라인에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성관계를 목적으로 유인하는 행위 등이 범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범죄를 행했다. 그러고도 피고인 이○○은 법정에서 터무니없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 이○○은 2024년 5월 29일(수)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 앞에서 진행된 ‘KBS 시사기획 창’과의 인터뷰에서 미성년자와의 대화가 처음이 아니었다고 밝히면서 “일단 그 보통 대화가 한두 달, 두세 달 하면 다 끝납니다. 애들은” 라는 발언을 했다. 피고인 이○○의 범행은 자의에 의해 중단된 것도 아니었다. 촬영 일정이 종료되면서 대화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 이○○은 촬영 이후에도 채팅앱을 탈퇴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 이○○은 그동안 단지 운 좋게 발각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024년 7월 26일(금) 피고인 이○○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전부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 이○○이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삼고자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에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인이어서 각 범죄에서 정한 구성요건적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피고인 이○○이 범죄의 대상을 명확히 13세로 인식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임에도 실제 피해자가 성인이었는지를 양형에 참작한 것이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유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도 하지 않았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법원의 양형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웠다. 검찰 역시 양형부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항소하였고, 범죄에 이용된 휴대전화에 대한 몰수도 요청하였으나 2024년 10월 23일(수)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것이 피고인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검찰의 항소도 전부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 중이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피고인 이○○의 재범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피고인 이○○에게 보호관찰을 명하여 주실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SNS(인스타그램, 트위터, 라인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 채팅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와 채팅하거나 만나지 말 것, 보호관찰관에게 휴대전화, 컴퓨터, 태블릿PC 등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자·통신기기를 보고하고,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디지털 분석 검사에 성실히 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 이○○이 저지른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일상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중범죄이다. 십대여성인권센터와 ‘KBS 시사기획 창’은 온라인 환경에

서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간절한 일념 하나로 그 실태를 보도하고, 성착취 범죄자 피고인 이○○을 어렵게 법정에 세웠으나 법원은 피고인 이○○를 선처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피고인 이○○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형사 절차에서 제출된 반성문도 고작 1부에 불과할 뿐인데 피고인 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자들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하려는 사법부의 의지 없이는 결코 아동·청소년이 성착취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 성착취 목적대화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수사기관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성착취 실태를 고려하여 초범, 반성 여부, 공탁 등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사유를 감형요소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사법부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 사건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며 성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끝.

*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지원을 위한 상담과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온·오프라인 아웃리치, 아동·청소년/사이버/성착취(성매매 등) 관련 이슈 생산과 연대활동, 아동·청소년 성착취(성매매 등) 방지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연대 등 성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